

# 골판紙包裝 · 物流産業政策

## Corrugated Packaging & Logistics Industry Policy

이 난은 골판지포장 산업과 물류 산업 관련 정부 정책 및 산업계 정책 건의 내용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원 고시 제 1995-19호(1995. 5. 11)

### 조달청 비축물자 골판지원지 신규 지정 금리 6%, 협동조합 공동구매로 처리

조달청에서는 지난달 95.5.11일 부로 관련기업 및 단체 등과 사전협의회를 거친 후, 비축물자로 골판지용 라이너, 화학필프등 15개 품목을 신규지정물품으로 고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골판지포장업계를 대상으로 한국골판지포장조합에서는 비축물자 공동구매 사업참여를 조희한 결과 13개사 413억원(110,285M/T)의 참여 신청을 받았는데, 조달청의 저리 비축자금은 기본 금리가 연6%, 정부 행정비

용 1%, 조합 행정비용 0.5%, 도합 7.5%수준으로 6개월 간 지원후 상환되는 저금리 자금임으로 업계의 자금난 완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따라 한국 골판지포장조합에서는 조달청과 공동구매 사업추진 절차가 확정되는대로 곧바로 시행에 옮길 계획이다.

재정경제원 발표 '95년도 비축물자 범위에 관한 고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 '95년도 비축물자범위 재정경제원 고시 제1995-19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호 및 동법 시행령 제 3조에 규정한 비축물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1995년 5월 11일  
재정경제원장관

(비축물자의 범위)

1. 알루미늄
2. 전기동괴
3. 연괴
4. 니켈괴
5. 페로크롬

6. 코발트파우더
  7. 화학필프
  8. 생고무
  9. 활성탄
  10. 크라프트라이너
  11. 구석
  12. 철재빌레트
  13. 칩보드
  14. 고철
  15. 스텐레스
-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조달기금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구매비축된 비축물자의 재고품목은 방출 완료시까지 이 고시에 의한 비축물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物流管理士 制度 導入推進**

建文部, 企業의 採用義務 檢討中

건설 교통부에서는 근래 크게 붐을 조성하고 있는 물적 유통(物的 流通 : 物流) 관리문제에 대하여 물류에 관한 전문인력양성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의 대책으로 물류관리사 제도의 도입을 추진중에 있다.

우리나라 산업의 구조개편 및 발전여건상 필요적으로 도입하게 되는 물류관리 System에 있어, 각 기업이 물류이론의 정립이나 도입기법이 성숙되지 않은채 붓물처럼 밀어닥친 물류인식의 난맥상에 새 전기가 될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물류의 분류인 기업에 있어서의 판매물류(販賣物流), 조달물류(調達物流), 생산물류(生産物流), 그리고 폐기물류(廢棄物流)에 대하여 그 필요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하여 공동물류로 발전되는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창고나 항만, 도로건설이 곧 물류라는 파행성이 우려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긴요한 제도가 될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물류관리사제도는 포장, 수송, 하역, 보관 및 유통정보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육성하는 것으로 건교부는 이를 일종의 국가공인 자격으로 관리하고, 각 기업에 대하여 이들의 고용을 의무화하거나, 권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물류관리사제도는 금 95년내에 화물유통촉진법을 개정하여 늦어도 96년 하반기엔 제 1회 물류관리사를 선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中企事業 領域 保護 法律  
同法 施行規則 制度 立法 豫告**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사업조정법을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통합제정(1995. 1. 5)함에 따라 동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동법 시행규칙을 제정하기 위하여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에서는 관계당국에 95. 6. 9일 이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였다.

**1. 정부의 동법 시행규칙 제정 취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4,898호, 1995. 1. 5)됨에 동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기업자로 보게 되는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실질적 지배관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나. 대기업의 중소기업고유업종 참여 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사업조정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의 신청서식을 규정함.

다. 지정계열화 업종 및 품목을 직접 생산하는 위탁기업체는 그 시설의 내용 등 생산실태를 계열화촉진협의회에 신고토록 함.

라. 통상산업부장관은 위탁기업체와 수탁기업체간의 장기위탁계약 체결과 약정서 교부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표준장기위탁계약서 및 표준약정서를 작성·고시토록 함.

마. 위탁기업체 및 수탁기업체가 비치하여야 할 수·위탁거래에 관한 서류에 관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명기함.

**3. 한국골판지포장조합 제출의견**

**1) 시행규칙정부(안)에 대한 조합의견**

시행규칙정부(안)	조합의견
제3조(실질적 지배관계) ① 법 제4조 제1항에서 ————— ————— —————	제3조(실질적 지배관계 등) ② 법 제 4조 제 1항에서 ————— ————— —————
2. 지배기업자가 중소기업자로부터 그 중소기업자의 주된 사업 및 영업활동 또는 거래의 주된 부분을 위임받아 행하고 있는 경우	2. 지배기업자가 ————— ————— 위임받아 행하고 있는 경우 또는 지배 기업자와 거래 중소기업자간의 단일품목 독점 거래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2) 사유**

현재 대기업이 산업필수품으로 사용하는 포장재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 등에 대한 대기업의 침투방법은 법 정규제 출자 상한 30%이하를 출자하고, 자사그룹 전기업

의 물량을 독점 내부자 거래를 함으로써 실제로 고유업종을 참여 영위하고 있음으로 이러한 탈법 침투와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모기업과 자회사간의 고유업종 제품 독점거래를 50%이하로

차단함으로써 나머지 50%는 중소기업자와 거래하여 보다 많은 고유업종 영위 일반 중소기업자가 대기업과 거래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명문화 하여야 함.

상황을 보면, 38개사 중 33개사에 대하여 167명을 배정하였는데, 국가별 배정은 인도네시아 14개사, 베트남 8개사, 중국 조선족 6개사, 필리핀 3개사 등의 순으로 되어 있다.

동 한국골판지포장조합 조합원사는 94년도에는 당초 21개사에 165명이 배정되었는데 이중 21명이 중도취가 또는 미수용으로 보인 미배정 5개사는 전년도 배정된 인원을 계속 수용하고 있어 신규배정을 아니한 것이며, 협동조합 미가입자는 배정에서 탈락되었다.

이로써 한국골판지포장 조합원사는 기배정 활용인원 144명과 합하여 311명의 외국인 산업연수를 수용하고 있다. 업체별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인원 배정현황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업체 및 인원배정  
한국골판지포장조합 조합원 38사 167명**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사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및 동 시행세칙에 의거 1994년부터 본격 실시되고 있는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업체 및 인원배정 건에 대하여 그간 통상산업부, 법무부 및 노동부 간에 협의를 거쳐 동 업무를 위임받고 있는 중소기업중

양회 외국인 산업기술연수단에서 지난 5월 2일부터 12일간 동 외국인 산업기술연수 인원수의 신청을 받아 그간 연수자 수용업체 지정 및 수용인원 배정작업을 완료하고 6월 10일 95년도 수용업체 및 배정인원을 발표하였다.

한국골판지포장조합 회원사의 배정

No	업체명	대표자	배정인원	No	업체명	대표자	배정인원
1	(주)한 선	김 청	10	21	삼양판지공업(주)	김 홍 수	10
2	고당판지공업(주)	박 득 용	5	22	삼흥판지(주)	손 창 덕	7
3	(주)광신평지	유 현 기	3	23	(주)서우산업	이 종 건	5
4	국제지기인쇄(주)	김 문 기	2	24	서울지판	안 종 근	2
5	금성포장공업(주)	박 연 황	1	25	성흥포장공업(주)	김 강 현	3
6	대세포장(주)	정 만 수	1	26	(주)세울판지	박 재 귀	3
7	(주)대아산업	박 병 용	1	27	신진수출포장	양 한 석	4
8	대영포장(주)	김 승 무	10	28	(주)유진상사	유 현 기	3
9	대우페이퍼(주)	홍 승 기	3	29	(주)장천	이 상 건	2
10	대원판지공업(주)	성 백 응	5	30	제일산업(주)	윤 한 중	.
11	동방기업(주)	최 종 근	10	31	중앙포장(주)	박 병 찬	5
12	동서수출포장(주)	정 병 주	5	32	(주)청주판지	권 영 상	5
13	(주)동양포장공업	김 응 수	.	33	태영판지공업(주)	강 빈 구	10
14	동우판지산업	정 제 용	5	34	한덕판지공업(주)	이 완 중	5
15	동주제지(주)	조 병 우	4	35	(주)한림물산	조 병 우	3
16	(주)동진판지	김 귀 진	.	36	(주)한우포장	서 무 철	4
17	부평판지(주), 병점	류 주 현	.	37	한은판지공업(주)	김 청	.
18	부평판지(주), 이침	류 주 현	5	38	화성포장(주)	박 창 원	5
19	(주)산성	김 판 길	6				
20	삼보판지공업(주)	류 중 우	15				
				합계	38사		167명